

III. 준법감시인(Compliance Officer)제도의 도입 및 효과

EXECUTIVE SUMMARY

1. 논의 배경

- 은행(4월)에 이어, 증권사와 투신(운용)사는 9월말까지 기존 감사 부서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함
 - 이는 지난 1월 개정·시행된 「증권거래법」 및 「증권투자신탁업법」을 구체화해 증권사와 투신(운용)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
- 이에 본 고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해 준법감시인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,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함

2. 준법감시인제도의 개요

- **(정의)** 준법감시인 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, 운영하는 것임
- **(역할)** 준법감시인은 법규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,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, 이사회·경영진에 대한 지원 및 자문, 법규 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함
- **(조직)** 감사 부서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을 보조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준법감시(자문)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함

3. 국내외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 실태

- **(국내)**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, 준법감시 기능을 위험관리 부서에 귀속시켜 운영해왔으나 실제 그들의 감독권도 주로 거래활동에만 국한됨
 - 준법감시 기능이 복잡·다기화되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·운영하는 주체가 불분명 함
- **(미국)**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음
- **(영국)**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며, FSA는 준법감시인제도를 금융감독비용의 축소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임

4. 시사점

-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
- 준법감시인의 역할 명확화 등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
- 선진제도 정착을 위해 경영자의 의지 등 금융기관 스스로 발전적 도입방안을 모색함

1. 논의 배경

- 증권사와 투신(운용)사는 오는 9월말까지 기존 감사 부서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
 - 이는 지난 1월 개정·시행된 「증권거래법」 및 「증권투자신탁업법」을 구체화해 증권사와 투신(운용)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
 - 은행의 경우 4월부터 준법감시인(Compliance Officer)제도가 도입돼 은행 내부의 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음
- 금융업계의 준법감시인 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, 운영하는 것임
 -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와 업무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,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함
 - 즉,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체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·점검하는 활동을 말함
- 최근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
 -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금융회사나 동일업종에 5년이상(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경우 3년)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함
 - 이에 따라 금감원 등 정부 인사의 준법감시인 자격 논란 및 일각의 낙하산 인사 비판 움직임 등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음
 - 이에 본 고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, 준법감시인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함

2. 준법감시인 제도의 개요

- 준법감시인은 임원급으로 선정되며, 이사회·감사위원회·경영진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,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하는 고유 권한을 갖게 됨
 - 준법감시인은 법규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,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, 이사회·경영진에 대한 지원 및 자문, 법규 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함

-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기능 비교

- 준법감시인이란 임직원의 직무를 견제 감시한다는 기능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같음
-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사후 시정 위주로 이뤄지는 반면, 준법감시인은 사전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이함

<표 1>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기능 비교

구 분	감사위원회	준법감시인
성격	· 경영진의 직무를 제 3자적 관점에서 견제·감시	·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스스로의 법규 준수 체제를 구축·운영
근거법규	· 상법	· 금융관련 법률
활동주체	·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	·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(법규준수 의무가 있는 일반 부서까지 포함)
주요업무	· 업무 및 회계 감사 · 이사의 보고 수령권 및 위법 행위유지청구권 · 임시주총소집요구권 등	·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· 모니터링, 개선, 임직원 교육 · 이사회, 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 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
상위기관	· 이사회	· 이사회
상호관계	· 이사회, 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 부서의 감사 및 처분권 ·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에 대한 감사	· 법규위반사실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의무 · 감사업무의 지원 및 자문

자료: 금융감독원

-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금융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자격기준을 설정,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함

-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지위를 감안할 때 최소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충족되어야 할 것임
- 따라서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되, 집행간부급으로의 선임이 필요함

- 준법감시 기능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능동적 조직문화를 유도함

- 이사회의 역할: 준법감시체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,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, 준법감시 담당조직의 설치 등

III. 준법감시인(Compliance Officer)제도의 도입 및 효과

- 경영진의 역할: 준법감시체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하고, 법규준수의무 부서에 대한 자율적 통제체제 구축·운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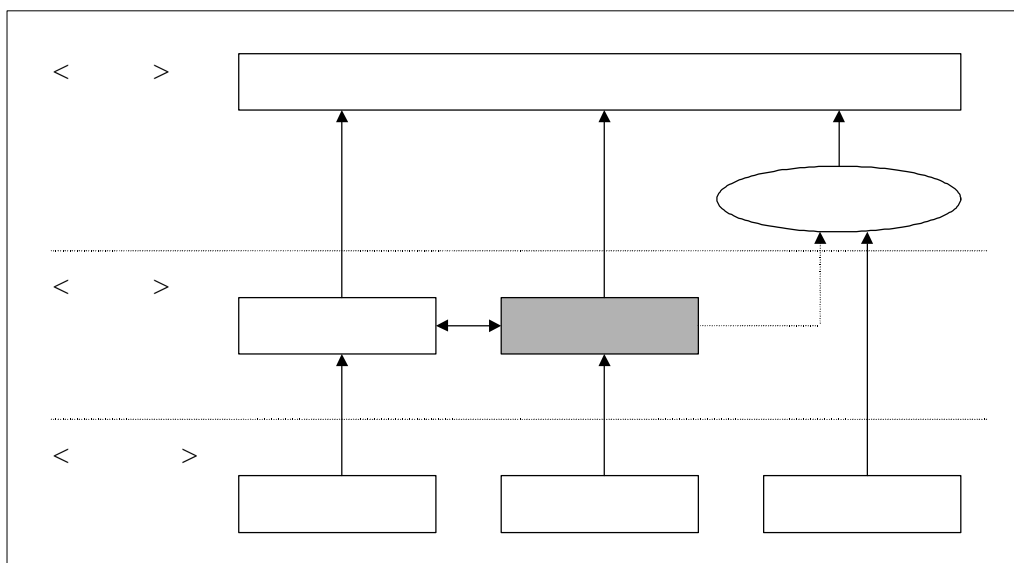
<표 2> 준법감시인의 역할 - 증권회사의 경우

구 분	내 용
내부자거래 방지	· 내부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 또는 해석
방화벽 설치	· 감시목록(Watch List) 또는 금지목록(Restricted List) 등의 성으로 방화벽 정책 이행
리서치 발간물 감독	· 내부정보에 근거한 리서치 발간물에서의 매매 추천 검증 · 감시목록 또는 금지목록에 있는 종목이 리서치 보고서에 재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
미공개 정보의 접근 감시	·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의 적절한 통제 · 정보제공시 사전공지 및 부서장의 승인 요(要)
기타 일반적 사항	· 특정 행위에 대한 적법성 또는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 부서의 자문나 유권 해석을 구하도록 함

주: 한상범, 증권회사의 베스트 프랙티스, 「증권」 참조.

- 조직내에 감사 부서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을 보조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준법감시(자문)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함
 - 법규 준수의 여부에 대한 검토수요가 빈번한 부서는 부문별·부서별로 소속 직원을 준법감시담당자로 지정하여 활용함

<그림> 조직내 준법감시조직의 위상



4. 국내외 준법감시인 제도의 운영 실태

- (국내) 준법감시체제의 부재로 담당업무에 따라 감시기능의 부분적 수행
 - 사후적 시정 위주로 이루어지는 감사 기능의 일부로 인식됨에 따라 준법감시 기능의 본질이 왜곡되어 사전적·자율적 통제기능이 미흡함
 -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, 준법감시 기능을 위험관리 부서에 귀속시켜 운영해왔으나 실제 그들의 감독권도 주로 거래활동에만 국한됨
 - 준법감시 기능이 복잡·다기화되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·운영하는 주체가 불분명 함
 - 국내 은행의 경우 4월부터 준법감시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대부분 기존의 감찰반이나 리스크 관리부서를 개편해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음

- (미국)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음
 - 감독당국은 기준설정 및 감독을, 금융기관은 준법감시 체제 및 절차의 구축·유지를 책임짐
 - 준법감시인 또는 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법규 준수에 대한 의무를 강력히 부과하거나 위반시 범칙금의 차등 부과를 통해 감독하고 있음

- (영국)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며, **FSA(Financial Service Authority)**는 준법감시인제도를 금융감독비용의 축소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임
 -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및 감독규제체제의 지속적 발전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 및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
 - 이에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적 강화와 비용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두됨

<표 3> 선진 외국의 준법감시 체제 내용

미국	영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감시 기능 전담 · 세부적인 법규 준수 프로그램 구축·유지 ·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제환경의 적정성 · 고위 경영진에 의한 통제활동의 적정성 · 첨단 정보기술(IT) 환경에서 통제시스템의 적정성 · 금융기관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통제 대상

5. 시사점

- **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시장 신뢰 제고**
 - 준법감시인 제도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기관 위주의 체제와 정착된 관행과 법규의 괴리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 위한 방안임
 - 또한 금융업계의 병폐로 지적되는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유관 금융기관과의 부당 거래, 내부자거래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
 - 고객의 신뢰도 약화 및 경쟁의 심화 그리고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영위기를 극복해내는 방안임

- **효과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**
 - 현재 본 제도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조차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스스로 준법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함
 - 예컨대, 준법감시인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해서 책임을 지울 경우 업무상 중복 등으로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
 - 준법감시인 제도를 통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축소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관성있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

- **금융기관 스스로 발전적 도입 방안 모색**
 - 준법감시인은 사전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사실보다는 위험관리 부서에 근접하지만, 이 두 부서(위험관리와 준법)를 중복시킬 경우 각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
 -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관리 기능이 미흡한 상태로 양 부서의 선진화를 위한 병행 투자가 이상적인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음
 - 준법감시인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이해 및 훈련된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함
 - 또한 준법감시인의 임명은 이사회 산하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적격한 전문가의 보상 유인 제공 역시 필수적임

<부록> 일본 간가쿠(觀角)證券의 「준법감시위원회」제도 사례

- 금융감독청에 신고하는 ‘업무방법서’에서 준법감시위원회제도를 규정함
 - 위원회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청에 신고함
 - 동 제도의 영속성을 기하기 위해 정관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있음
- 위원회의 구성 및 신분 보장
 - 회사의 외부기관으로 설치하며, 이사회에 업무위탁에 의거 회사내 임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시함
 - 위원의 해임시 이사과반수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원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함

<표 4> 간가쿠(觀角)證券의 「준법감시위원회」제도 운영 내용

구 분	내 용
목적	· 적법한 경영을 통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 확보 · 회사경영의 안정화 도모 및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 보호
위원의 구성	· 위원의 수는 3명으로 구성되며, 회사 경영진(부사장) 1명이 참여 · 3명의 변호사를 위원회의 보조직으로 임명
위법행위 적발 방법	· 전임직원의 상담제도를 운영하고, 상사로부터 위법행위를 지시 받 경우에는 동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· 위법행위의 통보는 우편, 팩시밀리에 의한 보고서 제출, 직통전화 용 가능하며, 익명성 보장 · 통보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직접함(회사는 통보 불가)
위법행위의 조사 및 인정 방법	· 위법행위의 조사는 합리적 증거 및 공정한 절차에 의거 실행 · 조사대상자의 인권 및 명예를 충분히 보호하고, 반론 및 설명기회 부여 · 자진신고제도 운영: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을 경감
긴급 현상동결 명령제도 운영	· 위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시로 현상동결 ^{*)} 을 명령할 수 있음 · 현상동결 명령은 회사내부위원(부사장)을 통해서 실시
처분권고	· 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관련 위법직원의 처분을 권고 ·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분권고를 수용하여야 함 · 위원회는 발생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提言권한도 보유
기타 사항	· 준법감시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직원으로부터 법감시위원회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음 · 감사의 기능(이사의 위법행위 적발·정지)과 준법감시위원회의 기능 동일하며, 상호간 정보, 자료 제공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함

주: 민사재판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함.

(백홍기 : hkback@hri.co.kr ☎3669-4077)